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 중 1명(5급 1명)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2..00 ~ 12.00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78”을 “47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0”을 “471”로 하며,
3급 또는 4급 이하 “448”을 “449”로 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8조(한시정원) 청탁금지법령의</u> <u>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</u> <u>수행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</u> <u>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</u> <u>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</u> <u>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</u> <u>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.</u>	<u><삭 제></u>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1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<u>478</u>		<u>479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일반직 계			<u>470</u>		<u>471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3급 또는 4급 이하			<u>448</u>		<u>449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3